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총 무 과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괴평·송림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2개 법정리에 걸쳐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아읍 괴평리에 편입된 구역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고아읍 송림리 108필지(48,263㎡)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 고아읍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고아읍 괴평리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괴평리 일원 종래의 송림리 5-1, 6-1, 7, 8-1, 9~13, 14-1, 16-1, 17, 18, 18-2, 19, 20-1, 20-4, 20-5, 21, 22-1, 23, 24, 24-2, 27-1, 28-1, 30~32, 35, 36, 37-1, 38, 39, 40-1, 41, 42-2, 42-3, 49~52, 52-1, 53, 54-1, 55-1, 56-1, 58-1, 61-3~5, 64-1, 156-2, 156-3, 157-2, 158-1, 160-1, 161-1, 163-3~8, 163-11, 163-13, 163-15, 163-17~19, 164-5~7, 165-2, 166-23, 166-24, 486-12, 486-14~18, 487-12, 650-7~19, 651-15, 651-20~30, 652-2를 편입

별표의 고아읍 송림리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송림리 일원 종래의 송림리 중 괴평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리의 명칭과 구역(제2조 관련)

읍면별	리명칭	관할구역
선산읍	완전리	완전리 일원
	동부리	동부리 일원 종래의 동부리 중 교리, 화조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종래의 교리 982, 985, 986-1, 987-1, 988-1, 989-1, 989-8, 989-9, 989-10, 989-11, 989-12, 990-1, 990-3, 1148-5, 1148-7, 1148-8, 302-7, 302-8, 979-2, 980-1, 980-2, 981-1, 983-1, 984-5, 1082-112, 1147-5을 편입 종래의 화조리 581-73, 581-77, 581-2을 편입
	노상리	노상리 일원
	이문리	이문리 일원
	죽장리	죽장리 일원
	봉곡리	봉곡리 일원
	포상리	포상리 일원
	소재리	소재리 일원
	내고리	내고리 일원
	북산리	북산리 일원
	습례리	습례리 일원
	봉남리	봉남리 일원
	교 리	교 리 일원 종래의 교리 중 동부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종래의 동부리 687-60, 687-62, 687-63, 2-9, 2-10, 3-1, 4-16, 687-81, 687-82, 687-85, 688-3, 688-4을 편입 종래의 화조리 579, 581-45, 581-46, 581-48, 581-49, 581-68, 576-3, 577-1, 578-1, 571-71, 571-72, 581-74, 581-75, 581-76, 산1-85을 편입
	화조리	화조리 일원 종래의 화조리 중 동부리, 교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종래의 동부리 687-83, 687-84을 편입
	원 리	원 리 일원
	독동리	독동리 일원

	생곡리	생곡리 일원
	신기리	신기리 일원
고아읍	관심리	관심리 일원
	이례리	이례리 일원
	오로리	오로리 일원
	대망리	대망리 일원
	파산리	파산리 일원
	신촌리	신촌리 일원
	황산리	황산리 일원
	횡산리	횡산리 일원
	외예리	외예리 일원
	내예리	내예리 일원
	원호리	원호리 일원
	문성리	문성리 일원
	다식리	다식리 일원
	괴평리	괴평리 일원 종래의 송림리 5-1, 6-1, 7, 8-1, 9~13, 14-1, 16-1, 17, 18, 18-2, 19, 20-1, 20-4, 20-5, 21, 22-1, 23, 24, 24-2, 27-1, 28-1, 30~32, 35, 36, 37-1, 38, 39, 40-1, 41, 42-2, 42-3, 49~52, 52-1, 53, 54-1, 55-1, 56-1, 58-1, 61-3~5, 64-1, 156-2, 156-3, 157-2, 158-1, 160-1, 161-1, 163-3~8, 163-11, 163-13, 163-15, 163-17~19, 164-5~7, 165-2, 166-23, 166-24, 486-12, 486-14~18, 487-12, 650-7~19, 651-15, 651-20~30, 652-2를 편입
	송림리	송림리 일원 종래의 송림리 중 괴평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봉한리	봉한리 일원
	항곡리	항곡리 일원
	예강리	예강리 일원
산동읍	동곡리	동곡리 일원 종래의 동곡리 중 도중리, 적림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도중리	도중리 일원 종래의 도중리 중 적림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종래의 동곡리 986~1026, 1177, 1183~1190, 산61-4, 산65, 산66을 편입 종래의 적림리 549, 550, 561, 산9, 산10-2를 편입

	적림리	적림리 일원 종래의 적림리 중 신당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종래의 적림리 중 도중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종래의 동곡리 981~985, 1175, 1176, 1178~1181을 편입 종래의 도중리 897을 편입
	성수리	성수리 일원
	신당리	신당리 일원 종래의 신당리 중 인덕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종래의 옥계동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310, 468-1, 468-5, 469, 470-1, 471, 산53-1을 편입 종래의 인덕리 1124, 1125, 1130, 1131을 편입 종래의 적림리 산54-1, 산82-1을 편입
	봉산리	봉산리 일원
	임천리	임천리 일원
	인덕리	인덕리 일원 종래의 인덕리 중 신당리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종래의 신당리 1490~1504, 1690, 1695, 1699을 편입
	백현리	백현리 일원
	송산리	송산리 일원
무을면	송삼리	송삼리 일원
	오가리	오가리 일원
	상송리	상송리 일원
	무수리	무수리 일원
	안곡리	안곡리 일원
	무등리	무등리 일원
	원 리	원 리 일원
	백자리	백자리 일원
	웅곡리	웅곡리 일원
	무이리	무이리 일원
옥성면	초곡리	초곡리 일원
	농소리	농소리 일원
	주아리	주아리 일원
	구봉리	구봉리 일원
	옥관리	옥관리 일원
	산촌리	산촌리 일원

	태봉리	태봉리 일원
	대원리	대원리 일원
	덕촌리	덕촌리 일원
도개면	가산리	가산리 일원
	동산리	동산리 일원
	용산리	용산리 일원
	월림리	월림리 일원
	신곡리	신곡리 일원
	궁기리	궁기리 일원
	도개리	도개리 일원
	신림리	신림리 일원
	다곡리	다곡리 일원
해평면	낙성리	낙성리 일원
	해평리	해평리 일원
	오상리	오상리 일원
	문량리	문량리 일원
	괴곡리	괴곡리 일원
	금산리	금산리 일원
	도문리	도문리 일원
	월호리	월호리 일원
	금호리	금호리 일원
	창림리	창림리 일원
	송곡리	송곡리 일원
	산양리	산양리 일원
	월곡리	월곡리 일원
	낙산리	낙산리 일원
	일선리	일선리 일원
장천면	상장리	상장리 일원
	신장리	신장리 일원
	하장리	하장리 일원
	상림리	상림리 일원
	금산리	금산리 일원
	오로리	오로리 일원
	묵어리	묵어리 일원
	여남리	여남리 일원
	명곡리	명곡리 일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 략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구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

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소 관 부 서		총 무 과
입 안 자	과 장	손 혁 영
	팀 장	조 근 호
	담 당 자	김 송 이 (480-6764)